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9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11. 15.,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 11. 18.

다. 상정일자 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19. 12. 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환경과장 박윤희

### 1)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의 제명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)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제명 변경

- 「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서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 
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(안 제1조)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 「물환경보전법」
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리

### 3)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#### 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19. 9. 26.~ 10. 16.(의견 없음)
- 2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신준호)

#### 가. 조례 제정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목적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인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과 「물환경보전법」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(안 제1조)
-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처리 근거인 상위법령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 반영(안 제4조~제5조)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의 제명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다소 시의성은 떨어지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○ 다만,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을 다양한 환경관련법에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, 물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에 국한하여 정하고 있음은 다소 아쉬움이 있음.

따라서, 관내 환경오염 위반 행위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환경관련법령<sup>18)</sup>의 근거를 가지고 위반행위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---

18) 화학물질관리법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토양환경보전법, 자연공원법, 하수도법 등